

제2회 원규심의위원회

2017. 1. 26.(목)

---

# 심 의 안 건

---

서울연구원

The Seoul Institute



##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[안]

### 1. 의결주문

정원외직원 임용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사유

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.5%를 반영하여 「정원외직원 임용규칙」 제13조(보수)의 [별표2]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‘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’ 개정(안 제13조 별표2)
  - 인상률 적용 : 2016년 대비 정률 3.5% 인상
  - 세부내용 : 붙임참조
- 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[별표2]의 운영직 부분 삭제

### 4. 시행일

이 규칙은 2017. 1. 1.부터 적용한다.

[붙임]

## 2017년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

[단위 : 천원 /월]

구분	직급	등급	계약금액	산정기준
초빙연구원	초빙선임 연구위원	가	4,576	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, 연구실적,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.
		나	4,406	
		다	4,234	
	초빙 연구위원	가	3,916	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, 연구실적,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.
		나	3,745	
		다	3,574	
	초빙 부연구위원	가	3,540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3,369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3,199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위촉 연구원 · 연구 보조원	위촉 연구원	가	2,719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2,607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2,493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연구 보조원	가	2,174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2,060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1,945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운영직원	운영직원	(삭제)		